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영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642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. 29.

발 의 자 : 김영배 · 전재수 · 한병도
송갑석 · 이상현 · 김승원
고민정 · 남인순 · 이장섭
김철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에게 부정한 투·개표나 법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는 이를 신고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,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나 미성년자 등은 투표참관인이나 개표참관인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.

한편, 투표관리관·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은 공무원, 각급학교의 교직원, 투·개표 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사람 등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도 투·개표참관인보다 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요구되는 투·개표사무원 등으로 위촉될 가능성이 있어 명문으로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.

이에,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투표관리관·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(안 제146조의2제2항 등).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6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될 수 없다.

제147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.

제17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투표관리관 등의 위촉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투표관리관, 사전투표관리관, 투표사무원 또는 개표사무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6조의2(투표관리관 및 사전 투표관리관) ① (생 략) ②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 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 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며, 사전투표관리관은 위촉된 투표 관리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. <u><단서 신설></u> ③ · ④ (생 략)	제146조의2(투표관리관 및 사전 투표관리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다만,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 람은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 표관리관으로 위촉될 수 없다. 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第147條(投票所の 設置) ① ~ ⑧ (생 략) ⑨ 읍·면·동선거관리위원회 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투표 사무원을 위촉하여야 한다. <u><단서 신설></u> 1. ~ 5. (생 략)	第147條(投票所の 設置) ① ~ ⑧ (현행과 같음) ⑨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다만,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 람은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. 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⑩・⑪ (생략) 第174條(開票事務員) ① (생략) ② 개표사무원은 제147조제9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중에서 위촉한다. <u><단서 신설></u> ③ (생략)	⑩・⑪ (현행과 같음) 第174條(開票事務員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. <u>다만,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.</u> ③ (현행과 같음)
--	--